

□ 海外電子情報專門委員會 構成 및 活動

◎ 구성일시 : 2005. 7. 13

◎ 구성목적 및 배경

국가라이선스 해외 DB 선정 및 협상과정에 수요자인 대학이 적극참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협의회와 사립대학도서관 협의회 산하에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를 구성함.

◎ 조직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4개교
-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4개교

◎ 2005년도 위원 명단

협의회	대학	성명	직급	비고
국공립대학도서관 협의회	서울대학교	이중요	사무관	수석 위원장
	경북대학교	정민진	사서주사	위원
	부산대학교	최말희	사서주사	위원
	충남대학교	홍구표	사서주사	위원
사립대학도서관 협의회	이화여자대학교	유경희	과장	위원장
	경희대학교	장소영	계장	위원
	성균관대학교	박기화	팀장	위원
	승실대학교	남상현	사서	위원
간사	서울대학교	권광희	사서주사	간사

※ 수석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협의회순으로 순환 선임.

※ 간사는 수석위원장 업무 수행시 별도 선임할 수 있다.

◎ 활동

- 회의 : 8회
- KERIS의 해외DB 국가 라이선스 선정 및 협상 위탁연구과제 수행
- KESLI-ScienceDirect 구독조건 개선 활동 : 구독조건 재조정 공문 2회, KESLI 방문 1회(본 협의회,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 공동)
- 2006년도 신규 국가 라이선스 선정

DB명	분야	비고
SCOPUS	사회과학 및 과학기술분야 초록 및 인용문헌색인 데이터베이스	
SAGE Education	사회과학분야 중 교육학 해외학술지 원문 데이터베이스	
LION	인문과학분야 중 영문학 관련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	

□ 大學圖書館디지털複製·傳送 共動對策委員會 活動

◎ 구성일 : 2004. 7. 29

◎ 조직구성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4명,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5명,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4명,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2명(위원장 : 서울대학교 도서관 김성중 사서서기관)

◎ 위원 명단

소속	근무처	성명	비고
국공립대학도서관 협의회	충북대학교	한상필	
	충북대학교	전민호	
	경북대학교	변태현	
	해양대학교	안병재	
한국사립대학도서관 협의회	고려대학교	이형구	
	광운대학교	이무진	
	동국대학교	김종철	
	숙명여자대학교	백항기	
	수원대학교	이규옥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 협의회	서울대학교	김성중	위원장
	송실대학교	장현희	
	전남대학교	선정숙	
	서울대학교	임영희	간사
전문대학도서관 협의회	대구산업정보대학교	문동섭	
	용인송담대학교	서배원	

◎ 주요활동

저작권법 28조 및 대학도서관 관련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으로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서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에 관한 연구'를 저작권법학회에 의뢰하여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2006년 개정기로 함

- 2004. 8. 24 :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 2004. 9. 14 : 제1차 운영위원회(향후 활동 방향 논의)
- 2004. 10. 28 : 제2차 운영위원회(저작권 분과 지정)
- 2004. 11. 20 : 저작권분과 회의(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회의)
- 2004. 12. 8 : 제3차 운영위원회(개정안 검토)
- 2004. 12. 14 :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에 저작권법 개정의견서(안) 제출 및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저작권법 개정요구
- 2004. 12. 20 : 한국도서관협회에 저작권법 개정 의견서(안) 제출 및 도협 담당자 미팅
- 2005. 2. 14 : 제4차 운영위원회 (저작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동의서 처리 관련)
- 2005. 3. 3 : 저작권법 개정관련 탄원서 제출(청와대, 문화관광부)
 - 국공립대학도서관 601인(강릉대의 36개교)
 - 사립대학도서관 912인(가톨릭대학교 외 65개교)
 - 전문대학도서관 176인(가톨릭상지대학 외 50개교)
- 2005. 3. 8 :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위한 1차 공청회 참석
- 2005. 3. 16 : 이광철 의원 및 보좌관 미팅
- 2005. 3. - 8. :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법 학회에 의뢰한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에 관한 연구"완료
- 2005. 4 : 저작권법학회에서 제출하는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2006년 저작권법을 개정기로 함
- 2005. 9. 5 : 제5차 운영위원회(문광위 31인 발의 의원 탄원서 송부 관련)
- 2005. 9. 9 : 저작권법 동시행령에 관한 탄원서 송부(31인 발의의원)
- 2005. 10. 10 : 제6차 운영위원회(향후 공대위 활동 방향 관련)
- 2005. 11. 3-4 : 이광철, 이미경 의원 미팅
- 2005. 11. 9 : 저작권법 중 개정 법률안 제출(이광철, 이미경, 정청래의원)
- 2005. 11. 10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회의 참석(보상금 제도 관련 의견 제시)

- 2005. 12. 5 : 저작권법전부개정 법률안 통과
- 2006. 1. 6 : 제7차 운영위원회(공대위 향후 활동 방향)
- 2006. 1. 11 : 제8차 운영위원회(도협의 저작권분과 설립 관련 공대위 입장 논의)
- 2006. 1. 20 :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디지털도서관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 및 발제(김성중 위원장 발제 예정)-천영세 의원 사무실주관

◎ 저작권법 중 개정 법률안

제출 연월일 : 2005. 11. 8.

I. 제안 이유

연구와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도서관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Digital Contents 구축, 상호대차서비스의 확대, 통신망을 이용한 신속한 전달체제의 구축, 디지털 자원의 공동 개발 이용 등이 저작권법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아 도서관의 일부 기능이 마비 상태이다.

이는 저작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대차(Inter Library Loan)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전송 범위를 도서관으로 한정하여 디지털도서관(Digital Library)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범위를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는 지금 주체를 도서관으로 지정하여 디지털도서관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이 제도는 경제적 격차에 따라 정보 취득의 격차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도입은 그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현실을 무시한, 저작권자의 일방적인 이익을 대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도서관과 사서를 예비 범법자 집단으로 가정하고 저작권 단체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말았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학위논문을 생산하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 디지털화하고, 자비로 과금 장치를 하며, 보상금을 납부하는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도서관은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막대한 인력과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저작권단체

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도서관에 전가하고 과실만을 취하는 불공정한 제도이다.

또한 대학도서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학위논문을 비롯한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간행한 비판매용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융통성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지금 원문 데이터베이스(Database 이하 'DB')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의 대부분이 대학도서관이며, 원문DB의 절대량이 학위논문임을 감안할 때 대학도서관의 주장이 저작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위논문의 저자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회원단체의 회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작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권리까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주장하는 것은 월권행위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현재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강화 측면에서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현 저작권법의 개정시 도서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결과이다. 대학도서관 단체는 디지털도서관의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단체의 과도한 주장이 담긴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2. 주요 내용

첫째, 현재 대부분 도서관에서는 복사업자가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사서가 직접 복사해서 이용자에게 복사물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전송 범위를 도서관에 한정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근하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보상금 제도를 이용하고, 과금 방법은 도서관을 통하지 않고 저작권 단체나 국가가 직접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송범위를 도서관만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디지털 도서관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각 도서관이 디지털 도서관의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원문DB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 도서관에 원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며, 설령 소장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부수가 각각 이어서 개개 파일별로 통제

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시 이용자 수는 그 도서관이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도서의 복본 부수에 따라 허용하여 출판 도서의 구입량과 연계함이 타당하다.

넷째, 비 판매용으로 디지털 복제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가 동일한 것을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그 비 판매용 DB를 폐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를 고려한다면 비 판매용 DB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현행법은 도서관이 보상금 지급의 주체로 되어 있으나, 보상금 지급의 주체는 이용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보상금을 부담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과금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DB 구축은 도서관이 하더라도 보상금은 이용자 부담 원칙과 도서관의 공익적 성격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부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제를 한 도서관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과 그 도서관이 속한 기관 내에서의 보상금 징수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도서관이 저작권 보호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도서관과 사서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저작재산권단체는 저작권보호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 신구조문대조표

현행	문광위제출안	개정요구안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전송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전송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전송

<p>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	<p>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	<p>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가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1인 1부 복제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p>
<p>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료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료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이 통상 구입하고 있는 도서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료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p>
<p>③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p>	<p>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p>	<p>③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p>
		<p>(삭제)</p>

<p>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의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도서관 등이 비 판매용으로 도서 등을 디지털 복제한 경우 그 도서 등을 판매용으로 디지털 복제할 수 없다.</u></p>
<p>④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p>	<p>④ 도서관 등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문 삭제></p>
<p>⑤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p>	<p>⑤도서관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p>	<p>⑤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p>

<p>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보상금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문 삭제></p>	
<p>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u>도서관</u> 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p>	<p>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u>도서관</u> 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저작재산권단체와 함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u>도서관등은</u>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任員會議 會議錄

- ◎ 일 시 : 2006.2.3(금), 11:00
- ◎ 장 소 : 충북대학교 도서관 이용자교육실
- ◎ 참석자 : 18명
 - 임원 13명, 사무국 2명, 참관 3명

◎ 참석자명단

직명	참석자	직명	참석자
회장	충북대학교 도서관장 장공자	부회장	한밭대학교 도서관장 최양진
기관이사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대리 사무관 장석일	기관이사	경상대학교 도서관장 정보영
기관이사	인천대학교 도서관장 오양호	실무이사	목포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성자
실무이사	서울시립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정규	실무이사	서울대학교 사서서기관 김성준
실무이사	전남대학교 사서사무관 선정숙	실무이사	부산대학교 사서사무관 김기태
실무이사	충남대학교 사서사무관 김창근	기관감사	부경대학교 도서관장 정상용
실무감사	강원대학교 사서사무관 이영우	사무국	사무국장 한상필, 총무 전민호
참관	경상대학교 사서사무관 여인솔	참관	경상대학교 도서관 유인한
참관	충북대학교 도서관 윤순근		

◎ 주요내용

- I. 협의회 업무처리현황(2005.7.1-12.31) : 서면 보고
- II. 경과보고(2005.7.1-12.31) : 서면보고
- III. 안건

1. 47차(2007.2) 세미나 개최 예정교인 밀양대학교의 부산대학교와 통합으로 세미나 개최교 조정

- 통합대학
 - ① 밀양대학교(47차 세미나 개최교, 2007.2) + 부산대학교
 - ② 삼척대학교(49차 세미나 개최교, 2008.2) + 강원대학교
 - ③ 여수대학교(53차 세미나 개최교, 2010.2) + 전남대학교
- 총회 및 세미나 개최교 순위표 : 붙임2 참조

- 제안배경 : 국·공립대학교의 통폐합 움직임이 향후 2~3년 동안 계속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세미나 개최교 순번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으로 교명이 사라질 경우 일정 기준을 정하여 세미나 개최교 순번을 재조정
- 토의결과 : 아래의 3개 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
 - ① 세미나 개최교 순번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으로 교명이 사라질 경우, 통폐합한 두 학교 중 규모가 큰 대학에서 세미나 개최

- ② 세미나 개최 순번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으로 교명이 사라질 경우, 지역거점대학에서 별도의 순번을 정하여 세미나 개최
- ③ 세미나 개최 순번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으로 교명이 사라질 경우, 세미나 개최 순번표에서 삭제하고, 차 순위 학교가 세미나 개최

2. 통합대학교의 회원교 존속 여부

- 51개교에서 48개교로 감소
- 회비 수입 감소 : 1,500,000원(500,000원 x 3개교=1,500,000원)

● 토의결과 :

국·공립대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한 회원교 감소 및 회비수입 감소 인정

3. 협의회 공로패 포상 : 공로 연수자 시상 건

퇴직 후 포상할 경우 길게는 1년 반 후에 시상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공로연수 시 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토의결과 :

정년퇴직을 위한 공로연수자의 공로상 시상은 직장의 일반적인 정서에 따라 공로연수 중에 공로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동의

4. 차기 회장교를 부회장으로 선임 건

도서관의 정보화, 전문화로 인하여 현안 문제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으로 협의회의원활한 운영과 일의 분담을 위하여 차기 회장교를 부회장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토의결과 :

차기 회장교를 부회장교로 선임하는 것이 협의회 업무의 연속성 및 능률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차기 임원 개편 때 부회장을 차기 회장교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가칭) 발족 의견 수렴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들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과 발전정책 및 위상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를 개편하여 그 기능을 확장하고자 함.

● 토의결과 :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가칭)' 발족 필요성 등의 대학도서관 현안문제를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6. 2006년도 주요 사업 계획(안)

- 가. 58차 총회 : 2006.6, 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 나. 45차 학술 세미나 : 2006.2.9-10, 금오공과대학교 도서관
- 다. 46차 학술 세미나 : 2006.7, 충북대학교 도서관
- 라. 제18차 국립대학도서관 서기관·사서사무관 회의 : 2006., 서울대학교 의학분관
- 마. 국립대학도서관보 제24집 발간 : 2006.5.8
- 바. 협의회 홈페이지 서버 이전(토닉소프트 → 서울대 도서관)

● 토의결과 : 원안과 같이 시행토록 협의됨

7. 기타 사안

- 가.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통합 건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 51개교
 -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 99개교 112개관
 -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 158개 대학중 약70개관

● 토의결과 :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통합논의가 일부에서 있으나 향후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의(가칭)에서 논의되기로 협의